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

I. 추진경위

-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는 정부의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과당 경쟁의 폐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여건 조성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0년대 중반이후 정부규제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80년대의 추진실적〉

- 7개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認·許可규제를 축소('80년)
- 특별법상 수입제한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수입추천 및 허가품목을 축소하고, 수입절차상의 제한을 완화('87~'89년)
- 「경제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간경제단체가 건의한 각종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을 구성하여 정유산업등 18개 산업의 경쟁촉진대책을 추진('88~'89년)

- 6개 공업단지관련법률을 통·폐합, 공업입지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입지공급 및 공장설치절차를 간소화('89년)
- '90년에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하여 정부규제완화시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 경제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를 설치하고 주류, 해운산업등 21개 산업을 대상산업으로 선정
 - 대상산업: 주류, 연탄, 농약, 의약품, 화물자동차운송, 버스여객운송, 자동차관리, 화장품, 해운, 원양어업, 배합사료, 창고, 기술용역, 정보통신, 관광, 은행, 증권, 보험, 석유, 콩관련식품, 제분
 - '90.7~12月中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석유산업을 제외한 20개 산업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시행중
 - 콩關聯食品과 제분산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방안 확정

〈그간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

(건수)

산 업	개 선 과 제	배 치 원 료	추 진 중 ²⁾
20	104	49 ¹⁾	55

- 註 1) 석유산업의 일부 개선완료 과제 포함
 2)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시행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임.
 3) 세부내역은 別添 참조.

II. '91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산업전반에 걸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우리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규제완화에 따른 과당경쟁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추진함.

〈규제완화 중점추진분야〉

-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국내산업의 대내경쟁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분야
- 민간기업의 사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간섭하거나 행정절차의 중복·복잡화로 민간의 자율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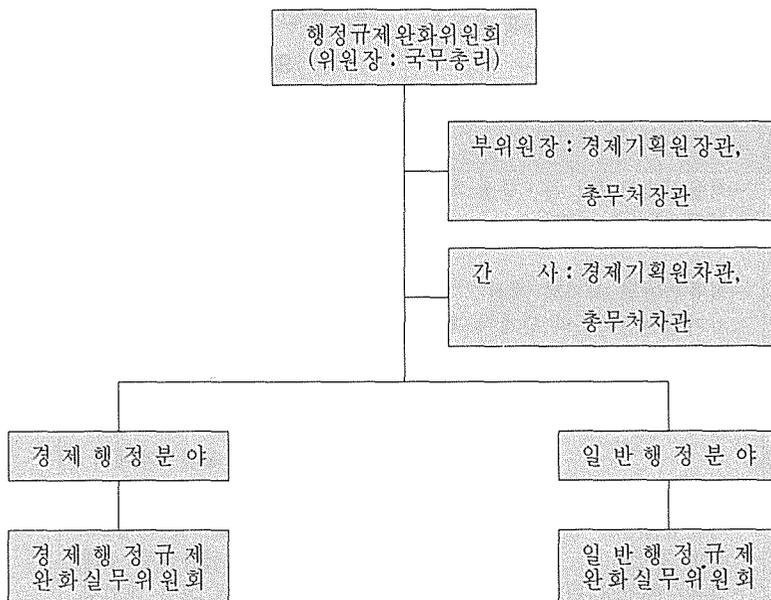
저해하고 불필요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분야
 - 시장참여제한등 유효경쟁 제약으로 가격·품질 및 서비스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소지가 있는 분야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2.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가. 추진체계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90.5.31)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장관등을 위원(총 22名)으로 구성하여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경제행정분야와 일반행정분야로 나누어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용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구 성

- 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
- 위 원 : 재 무 부 차관
농림수산부 차관
상 공 부 차관
동력자원부 차관
건 설 부 차관
보건사회부 차관
노 동 부 차관
교 통 부 차관
체 신 부 차관
과학기술처 차관
환 경 처 차관
법 제 처 차장
행정조정실 제2 행정조정관

-기 능

-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과제의 선정
- 관계부처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종합조정
-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나. 추진방식

- '91년 규제완화 추진대상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실무조정작업 및 추진상황 점검은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에서 총괄

- 일부 규제완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부처협의를 경제기획원 관련실국에서 담당
- 주무부처는 개선과제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제기획원 관련실국과 사전 협의후 실무위원회에 상정

3. 추진일정

- '91. 6月初 : 제7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개최
 - '91년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 확정
- '91. 7월초 : 제8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개최
 - '90년 미추진과제인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추진 방안 확정
- '91. 7. 5 : '91년 규제완화 대상과제에 대한 소관부처별 세부추진방안작성·제출
- '91. 7月 :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실무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 확정
 -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본위원회에 상정·확정하고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부처별로 시행

4. 추진과제

가. '90년 미추진과제 및 추가개선과제

産 業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 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1. 石油	-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 석유판매업 허가제 개선 ○ 거리제한기준의 단계적 폐지 - 정유사의 주유소 신설제한 폐지 - 석유정제품의 단계적인 가격자유화 검토 - 석유수출입의 단계적인 자유화	- 석유수요변화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 곤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제약 - 석유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신가중 및 판매업소의 이권화 초래 - 산업 및 유통의 二元化로 산업부문의 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통단계에서 흡수 - 가격의 수급조절기능 미흡으로 유종에 따라 수급불균등 초래 -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경	動 資 部 (공정거래위원회총괄정책국) " " " " "

産 業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자유화 유종에 대한 수출입제한 폐지 - 상표표시제(Pole Sign) 시행 	<p>쟁 효과의 도입을 제약</p> <p>- 流通秩序紊亂으로 消費者 不滿 招來</p>	<p>동 차 부 공 정 거 래 위</p>
2. 酒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제조면허개방 - 기타 재제주에 대한 제조장별 생산종목 제한 완화 - 민속주의 판매지역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제조업에 대한 신규참입제한으로 경쟁저해 - 주류 제조회사의 신제품 개발 노력을 제약 - 민속주의 보급 및 품질개발 노력을 제약 	<p>국 세 청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p>"</p> <p>"</p>
3. 금융 (은행·증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이용약관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이용약관중 일부사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 소지가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 미흡 	<p>재 무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4. 화물자동차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방침에 따라 시·도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이 불필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면적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사업자의 부담가중 	<p>교 통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p>"</p>
5. 자동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정비공장 등록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연면적 기준이 600평이상으로 과중하여 정비업의 신규 참입을 제약 	<p>교 통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6.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및 사무소 설치규제 완화 - 냉동운반선의 농수산물 구분운송제도 개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해운사의 해외진출 제약 - 수송화물구분으로 냉동선 이용의 비효율 초래 	<p>해 운 항 만 청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p>해 운 항 만 청 수 산 청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7. 기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술사 부족현상의 심화로 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 	<p>노 동 부 (정책조정국)</p>
8.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통신역무 이용조건인 법정 폐지 ○ 이용약관에 위임 - 전화소개업 신고제도등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통신역무의 다양화, 고도화 추세에 신속적으로 대응필요 - 전화의 대량공급으로 전화소개업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 상실 	<p>체 신 부 (정책조정국)</p> <p>"</p> <p>"</p>

- '90년 규제완화 추진대상산업으로 선정되었던 21개산업중 겔프사태로 추진이 보류된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추진
- '90년 규제완화 추진대상산업중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규제완화 이외에 추가로 규제

완화 추진

나. '91년 신규추진과제

(1) 산업별 규제 완화

- 다음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규제완화 추진

産 業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 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1.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및 건설관련공사업(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면허 개방 확대 검토 - 노무중심 전문공사업 면허의 등록제 전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득기회계약으로 면허가 이권화되어 각종 부조리 발생 및 기존업체의 체질개선 노력 부족 - 전문공사업중 목공, 미장, 도장등 노무중심공사는 대부분 심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본금등 면허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참입을 제한 	<p>건 설 부 동 자 부 체 신 부 내 무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p>"</p>
2. 항만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송사업(검수업, 검량업, 감정업등) 면허 확대 검토 - 항만용역업에 대한 허가 확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발급 제한으로 해당업종 면허의 이권화 초래 및 경쟁 제약 - 여타 항만운송부대사업(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등)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항만용역업만 허가제로 되어 있어 과도한 진입제한 	<p>해 운 항 만 청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p> <p>"</p>
3. 重機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重機貸與 및 정비업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중기형식승인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확인검사기간 연장 o 경미한 형식변경 사항의 경 우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중기조종사의 신상 변경신고창구의 일원화 - 重機 정기검사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입제한으로 해당업종의 경쟁저해 - 중기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최초 확인검사후 동일형식의 중기를 계속 제작시 매 6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부담 과중 - 경미한 형식변경사항도 승인을 받도록함에 따라 사업자의 불편 초래 - 중기조종사의 주소변경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입신고와 별도로 중기관리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초래 및 신고해태로 인한 불이익 사례 발생 - 중기소유자는 검사시효 만료일 	<p>건 설 부 (정책조정국)</p> <p>"</p> <p>"</p> <p>"</p>

産 業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는 검사받았을 재차 통고함이 없이 고발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초래	
4. 輕航空機	-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 부정기 항공 운임·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참입제한으로 대도시교통난 해소 및 교통오지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등 다양한 항공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저해 - 쌍방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어 정부규제가 불필요하고 실제요금 인가요금 이하로 적용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 상실 -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요변화에 따른 운임의 탄력성을 제약하여 사업경영의 효율성 저하	교 통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
5. 가스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허가제 개선 - 고압가스 판매업허가제 개선	- 시·도에 따라 판매업소간의 거리제한 또는 기존업소의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신규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경쟁을 제약 - 시·군에 따라 정수제 도입등 경쟁제한적으로 허가제를 운용함에 따라 고압가스판매업의 경쟁제약	동 자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
6. 농수산물 유통	- 수입농산물 강제 상장제 완화 - 양돈 사육두수 허가제 완화 - 양곡매매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 일정규격으로 포장된 양곡 및 생산자 등은 신고없이 자유판매 허용 - 양곡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및 임대변경시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직접 수입판매를 제약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제한 - 경쟁력이 있는 양돈업의 사육두수 규제로 양돈업의 경쟁력 제고 저해 - 산지 농민의 소비자 직거래계약 등 양곡소매업에 대한 신규참입 제한으로 경쟁 저해 - 식량의 절대부족시대에 양곡관리를 위한 규제로 주곡의 자급실현 등 양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상실 - "	농 림 수 산 부 (불가정책국) " " " 농 림 수 산 부 (정책조정국) "

産 業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 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 폐지 -魚箱子 제조업 및 판매업 지정제의 신고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의 절대부족시대에 시행하던 규제사항으로 규제의 실효성 상실 -魚箱子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 	수 산 청 (정책조정국)
7. 도·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連鎖化 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점포수 기준의 하향조정 -연쇄화 사업자의 사업지역제한 완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중소기업의 연쇄화 사업진입을 제한 -불필요한 사업지역제한으로 사업경영의 비효율 초래 	상 공 부 (물가정책국) "
8. 화물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유통제도 개선 ○복합운송제도 도입, 복합화물 터미널 육성 등 화물유통체계의 통합 일원화 ○복합운송업, 화물터미널 사업의 신규참입 허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유통에 대한 규제가 각 개별법으로 다기화되어 있어 화물유통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 	교 통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9.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영업 허가제한 완화 ○도시락 제조업의 작업장 면적 기준 완화 등 -식육제품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식품영업허가요건이 엄격하여 해당 업종의 신규참입을 제약 -식육제품의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업자의 부담 과중 	보 사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
10. 의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례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수수료 최고한도액 고시제도의 경직적 운용으로 의례식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빈발 	보 사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11. 수출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검사제도 개선 ○검사대상품목 축소 ○검사감면기준완화 -수출물품의 세관검사제도 개선 -간이정액환급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검사대상품목이 과다하고 검사감면기준이 엄격하여 선적 지연 및 비용증가 등 사업자의 부담과중 -수출면허시 필수검사대상품목이 과다하여 검사에 따른 통관 지연 초래 -간이정액환급품목에 대한 개별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월별로 일괄 승인함에 따라 개별환급이 지연되어 사업자의 부담 초래 	상 공 부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관 세 청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
12. 건축 및 토지 이 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建蔽率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建蔽率을 용도지역별, 시·도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지역발전과 국민의 	건 설 부 (경제기획국)

産 業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 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토지이용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및 각개별법에 의한 중복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 -건축물의 높이를 지역에 관계 없이 도로폭의 1.5배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약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배치법 및 산림법의 행위제한이 중복되어 절차복잡 	<p>“</p> <p>건 설 부 (경제기획국)</p>
13. 농지이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 완화 -농지매매증명 발급 요건 완화 -소유농지 위탁경영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 신고범위(1,500㎡이하)가 과소하여 농민의 농지전용에 불편 초래 -농지매매증명 신청시 농지위원 3인이상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농지매매에 불편초래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할 수 있는 통작거리가 8km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농지활용을 제약 	<p>농 립 수 산 부 (정책조정국)</p> <p>“</p> <p>“</p>

(2) 법령에 근거한 공동행위의 개선
 -법령에 근거한 공동행위중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

도입이 바람직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폐지 또는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공동행위 억제

類 型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 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수급 및 판매 공동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등 공동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행위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 제약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품목에까지 단체수의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간의 건전경쟁을 저해 	<p>상 공 부 (공정거래위 독점관리국)</p> <p>“</p>
사업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적하보험 및 수입적하보험의 효율자율화 등 -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간 포괄적인 공동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높음 	<p>재 무 부 (공정거래위 독점관리국)</p> <p>교 통 부 (공정거래위 독점관리국)</p>

類 型	검 토 과 제 (例 示)	규 제 개 선 사 유	관 계 부 처 (기획원담당)
	-창고사업간의 협정 제도 개선	-공동행위의 근거가 모호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가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	교 통 부 (공정거래위 독점관리국)

<別添>

산업별 규제완화 추진실적

1. 酒 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俗酒 제조면허제한의 폐지('88.12월) - 1제조장 1酒種 생산원칙의 폐지('88.12월) - 위스키 원액 수입제한의 폐지('88.12월) - 일반주류 소매상의 수입주류 취급 허용('88.12월) - 酒種別 알콜도수 제한의 완화('8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독주(8度→6~8度), 청주(14도→14~19도) - 소주 첨가물 규제의 완화('88.1월) - 청주의 백미사용 비율제한의 철폐('88.7월) - 주류의 용기, 포장, 표시등에 대한 규제완화('89.6월) - 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확대('90.1) - 自道소주 판매의무제도 개선('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판매비중 축소(50%→40%), 대상지역 축소 (전국시장점유비 10%미만지역→7%미만지역) - 주류도매장의 취급주종 제한 폐지('90.1) - 주류도매장의 판매지역 제한 완화('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군→시·도로 광역화 - 소주용 주류배정제도 폐지('92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91~'92년간 경쟁축진을 위하여 주류추가배정량 증대 ('91년 10%, '92년 20%) - 自道소주 판매의무제도 폐지('91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91년중 自道소주 판매대상지역축소(전국시장점유비 7%미만지역→5%미만지역) 및 판매비중축소(40%→30%) - 주류판매장의 판매구역 폐지('91년말) - 주류제조 면허제도 개선('91년 하반기중) - 알콜도수 자율화('91.7월) - 발효제 면허제도 폐지('91.7월) - 혼합식 소주제조허용('91.7월)
2. 연 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구역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국 63개 구역을 23개구역으로 광역화('89.5월) o 23개 구역을 道단위로 광역화('91.4월) o 연탄공급구역제한 폐지('93년) - 연탄제조업의 신고제 전환('91년)
3. 해 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및 사업구역의 제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韓日, 동남아권의 사업구역 통합('92년) o 韓日間 화물적취구분 폐지('91년말) o 원양정기선 사업자의 항로확장 허용('91년) o 3국간의 화물운송 신규참입 자율화('9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 LPG등 특수화물, 북방신규면허('90.10월) ○원양신규면허 : 근해선사('91년말) <li style="padding-left: 40px;">신규선사('92년말) ○저해신규면허('95년) -선박의 확보, 처분 및 용선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확보 사전협의제 폐지('90년말) ○계획조선의 5년내 외국처분제한 폐지('90년말) ○3년미만 傭船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0년말) ○6월미만 傭船의 건별 신고제를 분기별 일괄신고제로 전환('90년말) ○용선계약서류의 공증 또는 재외 공관장 확인제 폐지('90년말)
4. 자동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점검 및 계속검사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용승용차등의 정기점검제 폐지('91년 하반기) ○자동차 출장검사제도 도입('9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검사소 이외에도 1급정비공장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 제고 -자동차정비업, 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91년 하반기)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 완화('9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급정비업 : 400坪→200坪 -자동차 경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9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린더헤드가스켓,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머플러, 클러치케이블, 액셀러레이터케이블, 브레이크라이닝등의 교환 작업추가
5. 화물자동차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90.1) -사업구역의 제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의 사업구역 확대('91년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한 폐지('91년말)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규제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확대('91년 상반기)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2년말)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계통의 현실화('91년 상반기) ○노선화물영업소 설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91년 상반기) ○운행계통의 신설, 연장, 변경등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92년말) ○인가요금의 신고제 전환('92년)
6. 버스여객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업종 통합('91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형태를 일반·직행·고속으로 구분 -환경면허제도 확대운용('91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면허시 운송부대시설등 면허기준을 원칙적으로 배제 -사업계획 변경인가대상의 축소('91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계통별 최저·최고운행회수만 인가하고 인가범위내에서의 운행회수 조정은 신고제로 전환 ○운행시간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7. 관 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호텔에 대한 경신등록제폐지('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1.2등급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권한 지방 위임('92년) - 시행업자에 대한 외화취득 명령제도 폐지('92년) - 관광객 유치조정제 폐지('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국제회의 또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의 유치계획서 제출의무와 이에대한 교통부장관의 조정권고권한 폐지 -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위임('92년) 												
8. 기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육성업의 등록제 개선('90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설비 및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경우 기술사 및 고급기술자 30인이상 (건축사 1인포함)으로 등록기준을 완화 - 외국용역발주 승인한도를 10만달러로 상향 조정('90.10월) - 기술용역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91년) - 외국용역발주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91년) 												
9. 정보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회선의 공동사용 범위확대 및 타인사용 허용('88.12월) - 통신기자재 시험검사제도 개선('9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자재 승인제도를 형식승인으로 일원화 ○ 형식승인시 민간업계의 자체시험결과 인정 -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9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정보검색·처리역무제공업의 자유화 ○ 통신사업자의 신규서비스개발시 승인제도 폐지등 												
10. 창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92년) - 창고업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2년) - 창고영업의 양도 및 합병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92년) 												
11. 의 약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수입추천제의 완화('8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약품은 신고제로 전환 ○ 완제의약품 및 특수약품은 최초 수입시에만 추천을 받게 하고 재수입시는 신고로 대체 -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개선('9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소매가제도 적용대상 품목의 축소(18천개→72개품목) ○ 나머지 품목은 가격자유화 - 의약품 수출입제도 개선('91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수출입허가시 무역업허가외에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무역업허가만으로 가능토록 간소화 												
12. 화 장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허가제도 개선('91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제조시 메품목(13천여개)별로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것을 제품의 유이성에 따라 68개의 종별로 통합 허가 - 화장품 포장단위 규제완화('91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포장단위의 6종이하 및 종류당 중량차 30%이상 제한 폐지 												
13. 농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수입의 단계적 자유화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91</th> <th style="text-align: center;">'92</th> <th style="text-align: center;">'93</th> </tr> </thead> <tbody> <tr> <td>○ 당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6품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75</td> <td style="text-align: center;">68</td> </tr> <tr> <td>○ 누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24품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399</td> <td style="text-align: center;">467</td> </tr> </tbody> </table> - 상표사용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당 3개→5개로 확대('90.12월) ○ 전면 자율화('91년말) -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의 규제완화('91년 상반기) 		'91	'92	'93	○ 당년	146품목	75	68	○ 누계	324품목	399	467
	'91	'92	'93										
○ 당년	146품목	75	68										
○ 누계	324품목	399	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과 수입업의 신규참여 허용 ○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제제형태별 기본시설 삭제 ○ 수입업 시설기준 완화: 온실, 시험용포장, 무균실 삭제, 창고시설규모 축소 (660㎡ → 330㎡)
14.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곡물의 수입쿼타제 완화('89년) - 사료제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91년)
15. 원양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허가제도 개선('91.2월) ○ 어업별로 1~5년까지 차등되어 있는 어업허가기간을 일괄 5년으로 확대 ○ 조업시기를 일정하게 구분 허가하던 것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 - 원양어획물 반입규제 전면철폐('90.6월)
16~18. 금융(은행, 증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성예금 수취금지 등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90.7월) - 연체이자율 적용 개선 등으로 가계금융 소비자보호('90.7월) - 자동입출금기 등 설치는 전산체계를 완료하면서 추진('91년) - 단자회사 어음할인방식 개선('91.1월) - 각종 예규통첩 및 신고서 정비('91.3월) - 모집문서 도화작성기준의 완화('91.6월) - 화재보험의 공동인수해체('92.10월)
19. 콩관련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91년) - 대두가공업 시설변경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91년) - 대두유, 대두박 수입추천제 폐지('91.1월)
20. 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91년) - 가공업 시설변경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91년)
21. 석유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89.3월) ○ 서울: 1km → 700m - 나프타, 윤활유, 고급휘발유 가격자율화('89.3월) - 현물원유도입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89.5월) - 석유정제시설 개조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90.12월)

註1)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설치 이전에 부분적으로 개선된 사항임.



□개발동향□

흑해의 석유개발상황

불가리아해역의 2개 블럭, 터키해역의 1개 블럭이 분양되고 루마니아와 소련이 광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어 흑해가 또 하나의 주탐사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다.

Enterprise사는 불가리아국영 지질위원회와 50:50의 지분으로 Varna항 해역 2,000km²에 달하는 블럭 2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 영국독립계회사는 또한 근처의 Texaco사가 운영하는 블럭111의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기타 파트너로는 오

스트리아의 OMV(10%), 지질위원회(50%)등이 있다.

탄성과 탐사작업은 금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소피아항국은 British Gas, 벨기에의 Petrofina 등과 곧 2건의 해양탐사 광구분양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이제까지 불가리아는 흑해에서 석유나 가스를 생산한 적은 없으며, 1980년대 초에 소련에 의해 시추된 4개정 시추결과 1개의 소규모 가스전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한편 BP는 터키국영회사 TPAO사와 터기북부 76,000km²의 심해역탐사를 위한 50:50 합작투자를 체결했으며 3개 블럭이 제공되었다. 이는 루마니아의 16,000B/D 규모의 Lebada유전 근처의 해역이다.

〈주간석유뉴스〉